

22.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172호 1999. 2. 18

개 정 이 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없애고 신규교육의 교육훈련기간을 조정하여 교육훈련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설계등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자 수의 제한을 없앴으로써 용역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고, 부실벌점을 조정하는 등 부실벌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 가. 종전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 신규교육은 2주이상, 보수교육은 3년마다 1주이상 이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교육만 3주이상(기술사와 감리원인 건축사는 2주이상, 외국인은 1주이상)을 받도록 하여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부담을 덜어 줌(제3조제1항 및 별표 1).
- 나. 교육기관은 교육훈련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이동이 잦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게 교육훈련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

- 다. 설계등 용역입찰의 경우 종전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한 5개 내지 7개의 업체에 한하여 용역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대상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이상을 얻은 모든 용역업체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용역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함(제13조제1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 라. 감리전문회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기간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연장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변경에 따른 불편을 덜어줌(제38조제1항).
- 마. 종전에는 건설공사 또는 설계등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등에 대하여 부실의 정도에 따라 1점내지 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1점 내지 3점으로 축소하고 부실벌점의 부과항목을 구체화함으로써 부실벌점의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의 소지를 줄임(별표 8).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기간 등) ①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훈련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2호중 “학회 또는 단체”를 “학회·기관 또는 단체”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사업자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중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5인 내지 7인”을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이상을 얻은 자”로 하고, 동호가목 및 나목중 “1억5천만원이상”을 각각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으로 하며, 동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별표 5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표 5 제2호에 의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용역비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인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제13조의2제1항중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5인 내지 7인을”을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이상을 얻은 자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현상공모”를 “건축설계경기”로 한다.

제13조의3제1호중 “별표 5 제1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5인 내지 7인을”을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이상을 얻은 자를”로, “별표 5 제2항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3인의 업체를 선정할 후”를 “별표 5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

은 순으로”로 하고, 동조제2호중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3인의 업체를 선정하여”를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로 하며, 동조제3호중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5인 내지 7인을 선정하여”를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중 “품질보증계획”을 “품질보증계획 등”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영 제41조제1항 본문 단서”를 “영 제41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품질보증계획”을 각각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3항중 “국립 건설시험소장”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9조의2제2항중 “200억원이상”을 “30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중 “200억원이상”을 “300억원이상”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을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50억원미만”을 “100억원미만”으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3항 본문중 “소속공무원 또는 연구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30일 이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소속직원 또는 연구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 제1호(소규모 설계등 용역의 평가 기준)의 비고 제8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사전자격심사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별표 6의 비고 제5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사전자격심사시에는 종

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건설감리협회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별표 7의 비고 제5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사전자격심사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험·검사요원의 자격인정범위

등급	학력·경력자	기술자격자
1. 특급 품질 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 또는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토목 또는 건축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토목 또는 건축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등급	학력·경력자	기술자격자
1. 특급 품질 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10년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 8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재료시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2. 고급 품질 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7년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 또는 건축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토목 또는 건축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3. 중급 품질 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 또는 건축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토목 또는 건축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등급	학력·경력자	기술자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5년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4. 초급 품질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년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2년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 또는 건축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토목 또는 건축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재료시험기사·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비고 :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성격상 용접·비파괴검사·화공 및 방직등 특수분야의 품질관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준하여 특수분야의 품질관리원을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15를 삭제한다.

별표 17 제10호의 처분내용란중 “3월이내”를 “12월이내”로 한다.

별표 19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4호의 비고 제2호중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1. 신기술지정신청수수료 산출기준(법 제40조의2제1호관련)

구 분	관 계 법 령	금 액(1건당)
지정신청수수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2조	10,000원
신기술심사수수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4항	300,000원
중앙위원회심의수수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제2호	700,000원 (재심의의 경우에는 500,000원)

비 고

1. 지정신청수수료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2. 신기술심사수수료는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중앙위원회심의 수수료는 신기술심의소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위 표의 수수료외에 전문기관의 심사 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현지실사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이를 따로 부담한다.

3. 공장인증신청수수료 산출기준(법 제40조의2제3호관련)

등급	소요인원		소요기간
	특급기술자 (5급상당)	고급기술자 (6급·7급상당)	
1급	1인/일	2인/일	4일
2급	1인/일	2인/일	3일

비 고

1. 공장인증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위 표에서 정한 소요인원과 소요기간을 감안한 금액으로 하며, 소요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통계법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별노임단가중 건설 및 기타부문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2. 공장인증에 필요한 소요비용에는 위 표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외에 그 금액의 30%의 범위안에서 제경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3. 공장실사(1급 : 3일, 2급 : 2일)를 위한 소요비용에는 제1호의 비용외에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현지출장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4. 교량분야와 건축분야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 1개 분야는 위 표에서 정한 소요인원과 소요기간의 1/2을 적용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 내지 별지 제54호서식중 “국립건설시험소장”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의 앞쪽중 “국립건설시험소장”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국립시험건설소”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제2호(기술인력보유현황)의 ⑮도목분야란, ⑯건축분야란 및 ⑰특수분야란중 “기능사”를 각각 “산업기사”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1 및 별지 제5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등을 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된 후 최초의 교육훈련을 받는 자로서 1999년 3월 1일 현재 교육훈련중인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로 인한 부실벌점의 부과에 있어서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처분은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제3조제1항관련)

교육훈련의 종 류	교육훈련의 내용	교육훈련기간	
		건설기술자	감리원
1. 기본 교육	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나. 건설관련법령 및 제도	2주이상. 다만, 기술사 또는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경우에는 1주이상	2주이상. 다만, 건축사·기술사 또는 외국인인 감리원의 경우에는 1주이상
2. 전문 교육	해당분야의 전문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1주이상.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를 제외한다.	1주이상. 다만, 외국인인 감리원을 제외한다.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제13조의6제1항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부실벌점”이라 함은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감리전문회사 및 설계등 용역업자(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설계등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를 포함한다)와 및 감리원(이하 “건설기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제5호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라 함은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이 받은 부실벌점에서 제5호의 부실벌점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도록 한 점수를 말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측정기관은 제5호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을 정한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및 영업정지
-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 바.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 사.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 아. 건설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 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3. 부실벌점의 산정방법

- 가. 당해 반기에 동일업체의 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회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당해 점검에서 받은 부실벌점의 합을 점검횟수로 나누어 평균한 부실벌점을 당해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의 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당해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의 최근 3년간의 평균부실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 다. 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시 지적된 내용과 제5호의 주요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한다.

4. 부실벌점의 관리 및 적용

- 가.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에 대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때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계평균부실벌점이 2점이상 10점미만인 경우에는 1점, 10점이상 15점미만인 경우에는 2점, 15점이상인 경우에는 3점을 각각 감점한다.
- 나. 부실벌점은 매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 다. 부실벌점을 불이익과 연계하여 적용하는 최초의 시기는 업체의 경우에는 1996년 9월 1일로 하고, 건설기술자등의 경우에는 1997년 9월 1일로 한다.
- 라. 측정기관의 장은 부실사항에 대하여 당해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자등의 확인을 받아 제5호가목 내지 다목의 주요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부실벌점을 책정하고, 경감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제5호 라목의 주요경감사례를 기준으로 경감한 후 그

결과를 벌점부과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해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자등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마. 부실벌점부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은 부실벌점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측정기관은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부과벌점을 정정할 수 있다.

바. 이의신청을 받은 측정기관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부실벌점의 측정기준 및 경감기준

부실벌점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개별단위의 부실사항별로 부과한다.

가.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1	· 토공사의 부실	2 또는 3
	- 설계도서(관련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기초굴착과 절토·성토등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 기초굴착 및 절토·성토 등으로 인한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의 발생에 대하여 예방조치가 미흡한 경우	1
1.2	·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 주요구조물의 균열이 0.3mm이상 발생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3
	- 주요구조물의 균열이 0.2mm이상 0.3mm미만이거나 균열이 부재당 3개소이상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 기타 구조물의 균열이 0.3mm이상이거나 균열이 부재당 3개소이상 발생한 경우	1
1.3	·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 주요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2m ² 이상이거나 철근노출이 발생한 경우	3

번호	주요부실내용	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m²이상 0.2m²미만인 경우 - 기타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m²이상인 경우 	<p style="text-align: right;">2</p> <p style="text-align: right;">1</p>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상태의 불량 - 주요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보강이 3개소이상 필요한 경우 	<p style="text-align: right;">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기타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p style="text-align: right;">2</p> <p style="text-align: right;">1</p>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상태의 불량 -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을 상실한 경우 -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배수구의 관리가 불량한 경우 	<p style="text-align: right;">3</p> <p style="text-align: right;">2</p> <p style="text-align: right;">1</p>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 누수가 발생하거나 방수구조물에서 방수면적의 1/2이상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 방수구조물의 시공불량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p style="text-align: right;">3</p> <p style="text-align: right;">1 또는 2</p>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후 발생한 폐자재의 처리상태 불량 - 불량 건설폐자재를 이용한 성토나 불량 건설폐자재를 무단으로 폐기한 경우 - 건설폐자재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 	<p style="text-align: right;">2 또는 3</p> <p style="text-align: right;">1 또는 2</p>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단계별로 감리원(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한 시공 -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 감리원의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한 경우 	<p style="text-align: right;">2 또는 3</p> <p style="text-align: right;">1</p>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 주요구조부의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p style="text-align: right;">3</p>

번호	주요부실내용	별점
	- 주요구조부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2
	- 기타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1
1.10	·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 감리원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의 요구를 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2 또는 3
1.11	·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의 발생 -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1
1.12	· 공사수행과정에서 시공관리의 소홀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가설시설물(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 -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13	· 주요구조물에 대한 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등의 구조설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설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1.14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 정기안전점검의 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또는 3
1.15	·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가 미흡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 또는 2
1.15	·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실시의 미흡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시험요원 확보의 미흡 - 시험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시험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3

번호	주요부실내용	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실·장비나 시험요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장비를 사용한 경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상태의 불량 - 기준에 미달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기자재를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기구의 설치관련 기준에 미달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재의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불량 -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및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또는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생산시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몰타기를 한 경우 	1 또는 2
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상태의 불량 -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아니한 경우,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안하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몰타기를 한 경우 또는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하거나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2 또는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못하거나 장비결합사항을 방치한 경우 	1 또는 2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상태 불량 - 시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평탄성 측정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번호	주요부실내용	별점
1.21	- 주요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 주요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분보수가 필요한 경우	2
	- 기타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1
	· 계측관리의 불량	
	-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아니한 경우	3
	- 특별시방서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2
	-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가 소홀한 경우	1

나.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별점
2.1	·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 주요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 기타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 기타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2.2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 주요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나 감리원의 승인없이 이를 시행하는 경우	2 또는 3
	- 기타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
2.3	· 기성 및 예비준공검사의 소홀	
	- 검사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 검사후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번호	주요부실내용	별점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미지정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개월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기간내 미실시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3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사항 검토·확인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의 확인 잘못으로 시공후 주요구조부 또는 전체공사비의 10%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잘못으로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또는 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불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성실하지 아니하게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리시험중 일부종목을 누락하거나 시험횟수가 부족한 경우 	3 또는 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재 적합성의 검토·확인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미콘·철근(KS제품을 제외한다) 등 주요자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레미콘·철근 등 주요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자재의 품질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 또는 2

번호	주요부실내용	별점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처리지연으로 공정차질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p style="text-align: right;">3</p> <p style="text-align: right;">2</p> <p style="text-align: right;">1</p>
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한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p style="text-align: right;">1 또는 2</p>
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업무의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 - 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p style="text-align: right;">2 또는 3</p> <p style="text-align: right;">1 또는 2</p>
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감리업체에 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변경하거나 50%이상의 감리원을 변경한 경우 - 동일 분야의 감리원을 상당한 이유없이 3번이상 교체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명단을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p style="text-align: right;">2 또는 3</p> <p style="text-align: right;">1 또는 2</p>
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수질오염·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공사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style="text-align: right;">2 또는 3</p> <p style="text-align: right;">1 또는 2</p>
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이행확인의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의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의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p style="text-align: right;">2 또는 3</p> <p style="text-align: right;">1 또는 2</p>

다. 설계등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추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현장사전조사 또는 관계기관협의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변경사유의 발생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나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 및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였으나 조사범위의 선정 등이 부실한 경우 -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p>3</p> <p>2</p> <p>1</p>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질·기초조사의 잘못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기초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기초조사의 잘못으로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경미한 설계변경사유가 여러 건 발생한 경우 	<p>3</p> <p>2</p> <p>1</p>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변경사유의 발생 - 주요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기타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측량성과분석이 미흡한 경우 	<p>3</p> <p>2</p> <p>1</p>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수리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구조물 보완시공의 사례 발생 - 주요구조물의 전면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 주요구조물의 부분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 기타구조물의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p>3</p> <p>2</p> <p>1</p>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산출의 잘못 - 공종별로 10%이상 공사비가 증가하여 추가예산이 소요된 경우 - 공종별로 10%이상 수량차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p>2 또는 3</p> <p>1</p>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 설계도서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관련기준에 미달한 경우 	<p>3</p>

번호	주요부실내용	별점
	- 설계도서간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현장의 실정과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2
	- 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1
3.7	· 자재선정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 초래	
	- 주요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3
3.8	· 용역참여기술자 업무관리의 소홀	
	- 참여예정기술자가 실제의 과업수행시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3
	- 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또는 2

라. 부실별점경감기준

- (1) 시공능력평가, 우수업체 및 표창 등에 대한 부실별점의 경감은 당해 반기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2개이상의 표창은 1개로 적용한다.
- (2) 4.1사례 내지 4.4사례는 당해 현장에 대하여 경감하고, 4.5사례 및 4.6사례는 측정기관이 집계한 평균부실별점에서 경감하며, 4.7사례 및 4.8사례는 최종집계한 평균부실별점에서 경감한다.
- (3) 5.1사례는 당해 현장에 대하여 경감하고, 5.2사례는 측정기관이 집계한 평균부실별점에서 경감하며, 5.3부실사례는 최종집계한 평균부실별점에서 경감한다.
- (4) 6.1사례는 당해 용역에 대하여 경감하고, 6.2사례 및 6.3사례는 측정기관이 집계한 평균부실별점에서 경감하며, 6.4사례는 최종집계한 평균부실별점에서 경감한다.

번호	주요부실내용	별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4.1	- 최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2
4.2	- 구조물에 대한 최신기법 계측관리를 철저히 한 경우	1
4.3	- 최신 공사관리기법을 적용한 경우	1
4.4	- 매몰부분 및 완성구조물 검측 등의 기록(사진등)을 철저히 한 경우	1
4.5	- 시공능력 평가결과 당해 업체의 평균점수가 90점이상인 업체인 경우	1
4.6	-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2
4.7	- 우수건설업자로 선정된 경우	3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p>※ 4.5사례 및 4.7사례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 사례 모두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4.5사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5.1	- 최신관리기법을 적용한 경우	2
5.2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2
5.3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등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6.1	- 최신공법을 적용한 경우(당해 용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2
6.2	- 설계등 용역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인 경우	3
6.3	-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2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p>※ 6.2사례는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2

공장인증신청서				처 리 기 간
				180일
신 청 인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공 장 명			공장등록번호	
공 장 소 재 지		(전화 :)		
보 유 면 허		건설관련면허		기 타
신청분야 및 등급 (○로 표시)				
교 량		건 축		
1급	2급	1급	2급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제작공장의 등급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수 수 료
				건설 기술 관 리 법 시행규칙 별표 19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공장기술인력현황 및 기술자격증 사본 1부 3. 공장규모 및 설비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30307-03611민

'98. 12. 28 개정승인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주택회보